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3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 박민규·진선미·황정아

노종면 · 김우영 · 조인철

박희승 · 이학영 · 이정헌

채현일 • 윤종군 • 김영진

김한규·최민희·한민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.

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방송문화진흥회 가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진 문화방송의 운영에서 정치 적 중립,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,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 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3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13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 활동내용,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(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 회를 포함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4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노동조합이 진흥회가 최다출

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·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1명, 그 외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.

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-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

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객관적·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심의,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	제6조(임원) ①		
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	<u>13명</u>		
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			
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			
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	,		
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			
한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	4		
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			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가</u> 임	<u>다음 각 호에 따라</u>		
명한다.	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		
	<u>가</u>		
<u><신 설></u>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		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		
	<u>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</u>		
	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		
	의결로 확정한다.		
<u><신 설></u>	2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		
	활동내용, 회원의 수를 고려		
	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		
	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		
	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		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 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 다.
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(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 다)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4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
 사업자 노동조합이 진흥회가
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
 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
 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・
 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
 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.
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
 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
 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에
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1
 명,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
 을 추천한다.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

⑤ • ⑥ (생 략)

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, 공모 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----. 다만.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 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 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 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<신 설>

⑤ • ⑥ (생략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 결한다.

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1. (생 략) <신 설>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<u>⑦·⑧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0의2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1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의 구성 등) ① 이사회에 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객관적·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심의,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후보자를 3명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